

제 245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0.1.16.)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주 현]

목 차

-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2. 30.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2. 31.

2. 개정이유

- 거창군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의 상한을 조례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 거창군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체계 변경 : 제6장 제28조 ⇒ 제5장 제39조
- 나. 규칙에 규정된 투자유치위원회 사항 조례로 통합(안제3조~제10조)
 - 1) 해촉, 제척기과회피, 운영, 간사 및 회의록, 의견청취, 운영세칙 신설
- 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안 제15조~제16조)
 - 1) 500억원 이상 150명 이상 투자기업 100억원 이내(도비 포함)
 - 2) 추가지원 : 30억원 이내 추가 지원
- 라.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안 제17조)
 - 1)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투자기업에 50억원 이내 지원(도비포함)

마. 소규모기업 지원(안 제18조)

- 1) 지원기준은 투자유치위원회 심의토록 하여 탄력적 운영

바.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안 제19조)

- 1) 300억원 이상 30명 이상, 투자금액의 3퍼센트 이내 60억원 이내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지방자치법」 제9조
- 2) 「외국인투자 촉진법」

나. 예산 조치 : 2020년도 예산 160,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 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12. 4.~12. 2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조례 개정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포함하고 각 분야별로 조례를 체계화 하고자 현행 조례 제6장 제28조에서 제5장 제39조의 체계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서는 규칙에 규정된 투자유치위원회 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였으며
- 안 제15조에서 제16조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 및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과 소규모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9조에서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의견으로는

- 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을 규정함과 동시에 투자기업에 대한 세분화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에 중·소규모 투자기업의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관광산업의 경우도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에 활력을 더하고
- 수혜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이끌어 내어 거창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것으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반적인 조례와 관련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⑥ 제5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2조의10(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 9. 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

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 지출로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삭제 <2011. 9. 6.>

⑤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제109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제110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태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2. 지방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3. 증권으로 된 채권
4.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예금에 관한 채권
5.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예탁한 예금에 관한 채권
6. 보관금이 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7.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8. 외국 또는 국제기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
9.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외교관이나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한 채권

제111조(납부의 고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한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2조(독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1조에 규정된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를 말한다)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에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부일부 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115조(채권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배당의 요구 그 밖에 채권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2. 채무자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을 때
4. 채무자가 파산의 신고를 받은 때
5.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을 때
6.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7.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
8. 제4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

제132조(채권에 관한 계약의 내용)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 그 밖에 채권의 발생에 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당해 채권의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감면 및 이행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약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3조(채권계약의 약정) ① 계약담당자는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그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이행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체금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할 것
 2. 분할하여 이행하게 되어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또는 담보의 변경을 할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을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 ② 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도 약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 내에 대부금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기 전에 회수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

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차. (생략)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하. (생략)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마. (생략)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시행일 : 2019.12.25.]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시행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67호, 2019. 11.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지방 신·증설 투자) ① 국내기업 중 지방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신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국내기업 중 지방에 기존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이하 "증설"이라 한다)하는 기업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삭제
3.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의 각 호를 모두 수행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업종이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첨단업종에 해당할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다만,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이 지식서비스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하지 않아도 됨.

④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 및 고용인원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사업재편기업은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축소(기존사업장의 전부를 폐쇄, 매각,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신규 투자할 경우 제17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는 기존사업장 축소규모와 제3항제2호의 신규고용규모를 합산하여 충족하여야 한다.

1. 기존사업장의 축소계획
2. 투자사업장의 투자계획
3. 제2호에 따른 투자사업장의 신규투자가 제1호에 따른 기존사업장의 축소규모보다 크다는 내용

⑥ 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기존사업장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3항제4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생산 효율 제고를 위해 기존사업장 고용인원을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퍼센트이내(사업재편기업은 제외)에서 재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1에 따른 상시고용인원 산정시 감소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만큼 투자사업장 신규 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한다.

안건번호	의 건 13-0243	요청기관	충청남도	회신일자	2013. 9. 17.
안건명	보조금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p>•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p> <p>• 의견 <u>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u> 으로 보입니다.</p> <p>• 이유 <u>「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인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보조금 지급 결정 시 보조사업자의 일반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 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보조금액을 피담보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보조사업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u></p> <p>먼저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p>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하여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사안의 근거당권 설정은 보조금 환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일 뿐,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들과 다른 상위 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아도, 사안과 같이 보조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하기도 전에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재산에 근거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안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다 할 것입니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 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도지사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2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도지사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도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임대용지 공급) 도지사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8조(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 지원) ① 도지사는 서북부권역 등 균형발전대상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역별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의 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보조금 등의 지원규모를 2배의 범위에서 확대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차등지원 금액, 지역 및 업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제5조·제6조·제6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업종 및 연구소

2.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0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 등) ① 투자유치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투자통상과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둔다.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시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투자유치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서울세종본부에 투자유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자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차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기금운용의 계획 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2조(기금회계공무원 등)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통상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운영

제23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소관 일자리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기업의 전·현직 임원

3.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의 국내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제20조에 따른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장 보조금의 지원 등

제28조(시군의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투자기업 지원 신청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9.1.3.>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

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금을 제외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장 보칙

제33조(투자유치자문관)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경상남도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시·군 유치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투자유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유치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도지사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현행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의 설립”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와 제2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군 소속 공무원

- 3.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구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 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
-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그 밖에 기금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국내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7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공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외에 소재하는 공장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외기업 본점의 관내 이전 지원) 군수는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제

7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관내기업 증설투자비 지원) 관내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증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 사업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기반시설 사업지원 등) 군수는 군내에 입주하는 국내·외국인의 투자사업 및 기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16조(채권확보)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 이행확보를 위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1순위 저당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의 지원

제17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거창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0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장 보조금의 사후관리 등

제2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

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용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당초 사업계획서에 따라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 받은 인원을 3년 이내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27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